

입양부모가 바라보는 정부 대책

이설아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대표)

국내입양 절차와 환경

1. 입양 진행과정

2. 입양전제 위탁

3. 법원 허가

4. 입양 사후관리/사후서비스

입양부모-입양기관
보육시설

입양부모+아동
입양기관
보육시설
법원

입양가정
입양자조모임, 입양커뮤니티
입양 사후서비스기관
입양기관

입양신청
부부상담
심리검사
각종 서류 검증
양육 에세이
예비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의 건강
입양아동의 적응
양육의 어려움
보고서
법원판결

1년간 사후관리(입양기관/필수)
이후는 각 가정의 필요에 따른 선택
어떤 관리나 지원의 의무사항 없음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1.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 > '아동 최선의 이익' 이 무엇인지 이해와 합의가 없음
현장과 입양부모 커뮤니티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정으로 보내는 것,
그래서 아동과 부모가 애착형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머물러 있음.
- > 결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주체에 따라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
입양숙려기간 동안 생부모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통합된 입양대상아동 풀과 예비입양부모 풀에서 결연이 이루어 지는지,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동의 역사가 담긴 기록과 물품은 잘 보존되어 전달될 수 있는지,
예비입양부모의 삶의 히스토리에서 어떤 부분이 입양 후 자녀양육에서
강점과 취약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필요함.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2.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 > 현재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의무기관은 1년, 입양가족은 사후관리 기관이 끝나면 입양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조모임이나 민간 사후서비스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필요를 공급 받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입양부모가 원하면 평생 간섭 받지 않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구조임.
양육의 어려움을 개인의 실패로만 여기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신체적 학대는 외부에서 인지가 가능하지만 정서적 학대는 훨씬 더 발견이 어려우며, 입양아동 개인의 탓으로 여겨 입양부모는 상담 받지 않고 입양아동만 오랜 시간 치료실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음.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3.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하여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한다. (방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파견, 8시간(하루) → 10시간(2~3회로 나눠 제공)
(내용) 자녀 양육법 비중 확대,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

-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파견 :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내에서 강사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기존 강사 풀에서 활용할 시 내용과 방식에 변화주기 어려움. 예비입양부모교육은 입양 결심을 굳히는 교육이 아니라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지, 어떤 입양아동이라도 평생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지 성찰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오랜 고민과 연구를 기반으로 재구성 해야 함.
- > 10시간 (2-3회기)으로 방식을 바꾸더라도 입양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입양의 평생의 여정을 이해하고 조망하기까지 보다 긴 회기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스웨덴의 경우 3시간씩 7주간 교육)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4. 아동기-청소년기 등의 시기에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 현재 국내입양가정 통합서비스(위기입양가정 사례관리)는 매년 공모사업 형태로 선정하여 실행. 그나마 4월-11월까지 8개월간 이루어져 서비스 연속성 없으며, 서울/경기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통합서비스 기관마다 전문성 상이하며 공통의 양성과정이나 슈퍼비전 없이 자율적 운영에 맡긴 후 매년 결과보고 되면 끝.
- > 입양이슈 이해한 사례관리자 양성과정 필요. 슈퍼바이저 역할 해줄 전문가 필요함. 공모사업 형태가 아닌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서비스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 입양가정이 언제라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함.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5.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고,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 > 입양아동의 적응을 살피고 지원하려면 입양이슈를 이해하는 실무자가 있어야 함. 겉으로 드러나는 적응상태 외에도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전문성 필요. 입양과 양육 두 가지를 이해해야 적절한 지원이 가능함.
- > 관리 감독이라는 용어와 관점은 입양가정을 더욱 움츠러들고 문제를 숨기도록 함. 입양사후에 받는 지원의 선상에서 입양가정의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체계를 만들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도록 홍보해야 참여와 변화가 가능.

정리하며

1. 정부와 지자체 모두 **입양은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을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며 조속한 추진이 아닌 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2. 주요 관리 감독 기관이 될 **아동권리보장원** 먼저 **입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며 입양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3. 지금처럼 공모사업 형태가 아닌 **연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입양사후서비스 기관**을 두어 입양가정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기를 적시에 지원하도록 해야 함
4. 입양가정은 법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이므로 감시나 관리의 대상이 되거나 현물 현금 지원이나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 모두 적절하지 않음.
입양이슈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생애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함

감사합니다